

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.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

I. 목 적

이 실천사항은 주식회사 현대엘앤씨(이하 "엘앤씨")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」에서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"하도급법"이라 함)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II.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. 운용 실천사항

1.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. 운용 실천사항

가.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

- (1)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. 이 때 하도급관련 업무란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거래의 계약 및 그에 부수한 협력업체 관리 업무를 말한다.

나.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

- (1)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,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 단, 안전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결의로 '안전 없음'이라고 기록하고 관리한다.
- (2) 내부 심의위원회는 엘앤씨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(예상)금액이 일정비율(직전사업년도의 하도급거래금액이 1,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%, 1,000억원 이상 5,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%, 5,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2%, 1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1%, 다만 본 기준은 필요시 변경될 수 있다)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
<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>

-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
- ②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
-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
- ④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

- ⑤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
 - ⑥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
- (3)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,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 - (4)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건을 심의하여야 한다.
 - (5)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 - (6)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(7)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(제정시행일)

이 표준은 2009년 11월 1일부 제정하여 12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제2조 (개정시행일)

이 표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